

의안번호	제 2021 - 13호
의 결 연 월 일	2021. 5. 10. (제109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위원회 개관	1
1. 설립배경 및 연혁	1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7
3. 조직	7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9
II. 제7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0
1.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	10
2. 제7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10
3. 제7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1
III. 제8기 양형위원회 구성	35
1. 양형위원	35
2. 전문위원	36
3. 자문위원	37
IV. 2021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38
1. 양형기준 설정, 수정 지원 및 책자 발간	38
2. 양형연구회 활성화	39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41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42
5. 강의 및 교육	43
6.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44
V. 2019년 선고 판결 양형기준 준수율	46

I. 양형위원회 개관

1. 설립배경 및 연혁

가. 설립 배경

- 2004. 12. 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 건의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 1. 26.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 개정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사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나. 연혁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4. 27. 시행되어 같은 날 양형위원회 출범
- 출범 이후 활동 경과

【1기 양형위원회】	- 2007. 4. 27. ~ 2009. 4. 26. - 위원장 :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4. 24. 최종 의결 • 2009. 7. 1.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table border="1"> <caption>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caption> <thead> <tr> <th>범죄 유형</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90.51%</td> </tr> </tbody> </table>		범죄 유형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비대상 범죄	90.51%
범죄 유형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비대상 범죄	90.51%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9.49%</p>							

【2기 양형위원회】		- 2009. 4. 27. ~ 2011. 4. 26. - 위원장 이규홍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0. 6. 29. 의결 • 2010. 7. 15. 시행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 2011. 3. 21. 의결 • 2011. 7. 1. 시행
-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개정 형법 내용 반영]		• 2011. 3. 21. 의결 • 2011. 4. 15.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43.19%</p>		

【3기 양형위원회】		- 2011. 4. 27. ~ 2013. 4. 26. - 위원장 이기수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2. 1. 30. 의결 • 2012. 3. 16. 시행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 2012. 6. 18. 의결 • 2012. 7. 1. 시행
- 선거범죄 양형기준		• 2012. 8. 20. 의결 • 2012. 9. 1. 시행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 2013. 2. 4. 의결 • 2013. 7. 1. 시행
- 살인범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3. 4. 22. 의결 • 2013. 5. 15. 살인범죄 시행 • 2013. 6. 19. 성범죄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78.17%</p>		

【4기 양형위원회】	- 2013. 4. 27. ~ 2015. 4. 26. - 위원장 전효숙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4. 3. 31. 의결 • 2014. 7. 1. 시행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4. 10. 1.)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2015. 2. 2. 의결 • 2015. 7. 1. 시행												
-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5. 4. 13. 의결 • 2015. 5. 15.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12.49%</td> </tr> </tbody>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87.51%</p>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비대상 범죄	12.49%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비대상 범죄	12.49%												

【5기 양형위원회】	- 2015. 4. 27. ~ 2017. 4. 26. - 위원장 이진강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5. 15. 시행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 2016. 7. 1. 시행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7. 11. 의결 • 2016. 9. 15. 시행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6. 12. 5. 의결 • 2017. 1. 15. 시행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5. 15. 시행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7. 4. 10. 의결 • 2017. 7. 1.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9.34%</td> </tr> </tbody> </table> </div> <p>※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90.66%</p>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비대상 범죄	9.34%
대상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비대상 범죄	9.34%														

【6기 양형위원회】	- 2017. 4. 27. ~ 2019. 4. 26. - 위원장 정성진																
-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6. 11. 의결 • 2018. 8. 15. 시행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8. 7. 23. 의결 • 2018. 8. 15. 시행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 2019. 3. 25. 의결 • 2019. 7. 1. 시행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범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5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제6기 대상 범죄</td> <td>0.50%</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8.84%</td> </tr> </tbody> </table>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5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비대상 범죄	8.84%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5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비대상 범죄	8.84%																
※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91.16%																	

【7기 양형위원회】	- 2019. 4. 27. ~ 2021. 4. 26. - 위원장 김영란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1. 6. 의결 • 2020. 2. 1. 시행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4. 20. 의결 • 2020. 7. 1. 시행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5. 18. 의결 • 2020. 7. 1. 시행																			
- 마약, 강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0. 9. 14. 의결 • 2020. 10. 15. 시행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2020. 12. 7. 의결 • 2021. 1. 1. 시행																			
-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21. 3. 29. 의결 • 2021. 7. 1. 시행 예정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형기준 전체 대상 범죄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범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 대상 범죄</td> <td>9.49%</td> </tr> <tr> <td>제2기 대상 범죄</td> <td>33.70%</td> </tr> <tr> <td>제3기 대상 범죄</td> <td>34.98%</td> </tr> <tr> <td>제4기 대상 범죄</td> <td>9.34%</td> </tr> <tr> <td>제5기 대상 범죄</td> <td>3.15%</td> </tr> <tr> <td>제6기 대상 범죄</td> <td>0.50%</td> </tr> <tr> <td>제7기 대상 범죄</td> <td>0.56%</td> </tr> <tr> <td>비대상 범죄</td> <td>8.28%</td> </tr> </tbody>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 구공판사건 대비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 : 91.72%</p>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비대상 범죄	8.28%
대상 범죄	비율																			
제1기 대상 범죄	9.49%																			
제2기 대상 범죄	33.70%																			
제3기 대상 범죄	34.98%																			
제4기 대상 범죄	9.34%																			
제5기 대상 범죄	3.15%																			
제6기 대상 범죄	0.50%																			
제7기 대상 범죄	0.56%																			
비대상 범죄	8.28%																			

2.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 독립 위원회

3. 조직

가. 위원장 및 위원

- 대법원장이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검사 2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2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 위촉)

나.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둠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 2년(연임 가능)
- 현재 법관 3인(수석전문위원 1인 포함),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군법무관 1인,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4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

다.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단 설치
- 운영지원단은 운영지원단장(판사)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

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30명(양형자료분석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

라. 자문위원

-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현재 13명)

마. 조직도



4.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3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II. 제7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

- 2019. 4. 27. 출범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임명장 수여식 시행 후 공식일정 시작

2. 제7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 위원 명단 】

【2021. 2. 1. 기준】

지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위원장	김 영 란	제11기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위원 (법관)	김 창 보	제14기	서울고등법원장
	강 승 준	제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 연 금	제23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우 수 (상임위원)	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조 상 철	제23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고 경 순	제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염 용 표	제28기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정 영 식	제29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위원 (교수)	원 혜 옥	해당 없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이 주 원	제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심 석 태	해당 없음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최 은 순	제21기	변호사

3. 제7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 전체회의 15회, 공청회 2회, 심포지엄 3회, 전문위원회의 15회, 자문위원 회의 1회 개최

(1) 양형위원 전체회의(15회)

차 수	일 시	안 건
94차	2019.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 양형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등
95차	201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등 선정
96차	201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 균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97차	2019.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 균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형량범위)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98차	2019.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99차	2020.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100차	2020.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부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의결
101차	2020.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부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102차	2020.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전반기에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디지털 성범죄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2020년 하반기에 의결하기로 함

차 수	일 시	안 건
103차	2020.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 디지털 성범죄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범위반범죄 양형 기준 수정 대상 범죄에 추가 의결
104차	2020.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105차	2020.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106차	2020.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설정범위, 유형분류)
107차	2021.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의결
108차	2021.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의결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2) 공청회

회차	일 시	안 건
제15차 공청회	2020.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제16차 공청회	2021.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3)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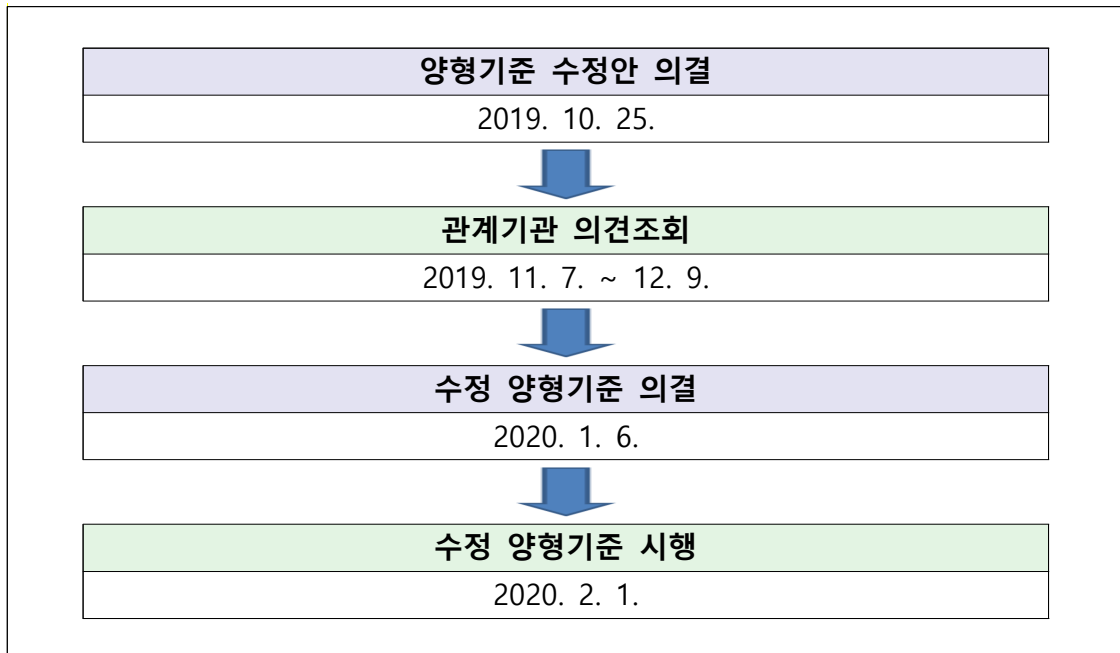
명 칭	일 시	주 제
-----	-----	-----

명 칭	일 시	주 제
제3차 심포지엄	2019. 6. 3.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제4차 심포지엄	2019. 11. 25.	▪ 화이트칼라 범죄와 양형
제5차 심포지엄	2020. 11. 23.	▪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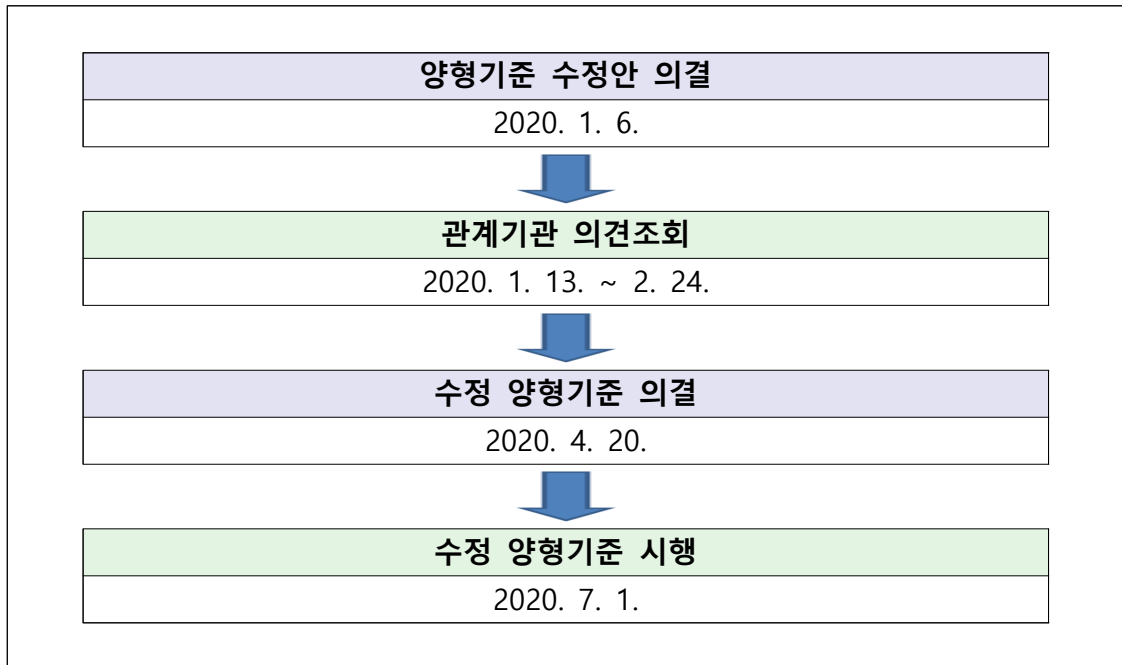
나. 양형기준의 수정

(1) 경과

- 제7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 의결(2019. 6. 10. 제95차 회의)
 - 전반기 : 선거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해설
 - 후반기 : 마약범죄, 강도범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추가(2020. 7. 13. 제103차 회의)
- 선거범죄



○ 교통범죄



○ 마약범죄, 강도범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 제7기 양형위원회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선거범죄

○ 대유형1 매수 및 이해 유도(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원 - 300만원 500만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원 - 700만원 2,000만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원 -	10월 - 2년6월	2년 - 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500만원 2,500만원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수정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에 있으므로 법률상 벌금형 상향의 정도를 반영하여 양형기준 형량 범위를 상향함

○ 대유형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300만원	6월 - 1년, 250만원 - 400만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원 - 300만원	- 10월, 200만원 - 800만원	8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원 - 600만원	6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1년 - 3년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1유형에 포함~~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함

▷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함

- 수정내용

- 공직선거법 제252조 개정

	개정 전 공직선거법	2015. 12. 24. 공직선거법 개정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	252조 1항, 96조 3년 이하 징역	252조 2항, 96조 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2,000만원 벌금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252조1항, 96조 2항 7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 및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는 종전 양형기준에서 1유형에 속했으나, 개정된 법정형에 맞는 유형으로 재분류 ⇨ ①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252조 제2항)를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②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252조 제1항)를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각 포함

(나)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범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소유형1 위험운전치상

- 종래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은 4월~1년 ⇨ 위험운전치상의 기본영역은 10월~2년6월로 형량범위 상향
- 종래 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은 8월~2년 ⇨ 위험운전치상의 가중영역은 2년~5년으로 상향됨(특히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7년6월까지 권고됨)
- 치상의 경우 상해주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과실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함

- 특별가중인자로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및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이 있음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함

- 소유형2 위험운전치사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기본영역이 8월~2년 ⇨ 위험운전치사의 기본영역은 2년~5년으로 형량범위 상향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은 1년~3년 ⇨ 위험운전치사의 가중영역은 4년~8년으로 상향됨(특히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12년까지 권고됨)
- 특별가중인자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및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이 있음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함

○ 교통사고 후 도주(형량범위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1년6월	8월 - 1년6월 2년6월	1년 - 3년 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7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8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10년

-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고,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 ⇨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짐

(다) 강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삭제를 반영하여 이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라)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법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삭제된 '임시마약' 관련 부분 제외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 부분 포함하되, 1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가)목, 2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라)목의 각 처벌규정과 같이 유형 분류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성 제거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설정 범위에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 관한 소유형 분류 기준인 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기준 삭제. 삭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은 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구간, ② 5,000만 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 양형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임
 -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을 유지할 경우 법정형과 유형 분류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 1로,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2로 분류되고 그 결과 소유형2에 속하는 다른 범죄인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와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 발생
- 권고 형량범위는 종전 양형기준을 유지하나, 대유형 4. 대량범의 제2소유형은 권고 형량범위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중전: 3년-6년)	5년 - 9년 (중전: 5년-8년)	7년 - 11년 (중전: 7년-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현행법 제167조, 구법 제66조의2)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포함	설정 범위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현장실습생 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현행법 제168조, 제169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일부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함
- 설정 범위 포함 범죄 예시: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 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 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형량범위 관련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징역형): 7년 이하 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수정 양형기준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5년	2년-7년	2년-10년6월	3년-10년6월
기존 형량범위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10월-5년3월	10월-7년10월15일	상습·가중 규정 없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전제로 도출한 형량범위

*** 5년 내 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였고,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서는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형량범위에 포섭함

[양형인자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5개 제시
-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여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기업범죄 양상을 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조직적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두 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하여,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함

다. 양형기준의 설정

(1)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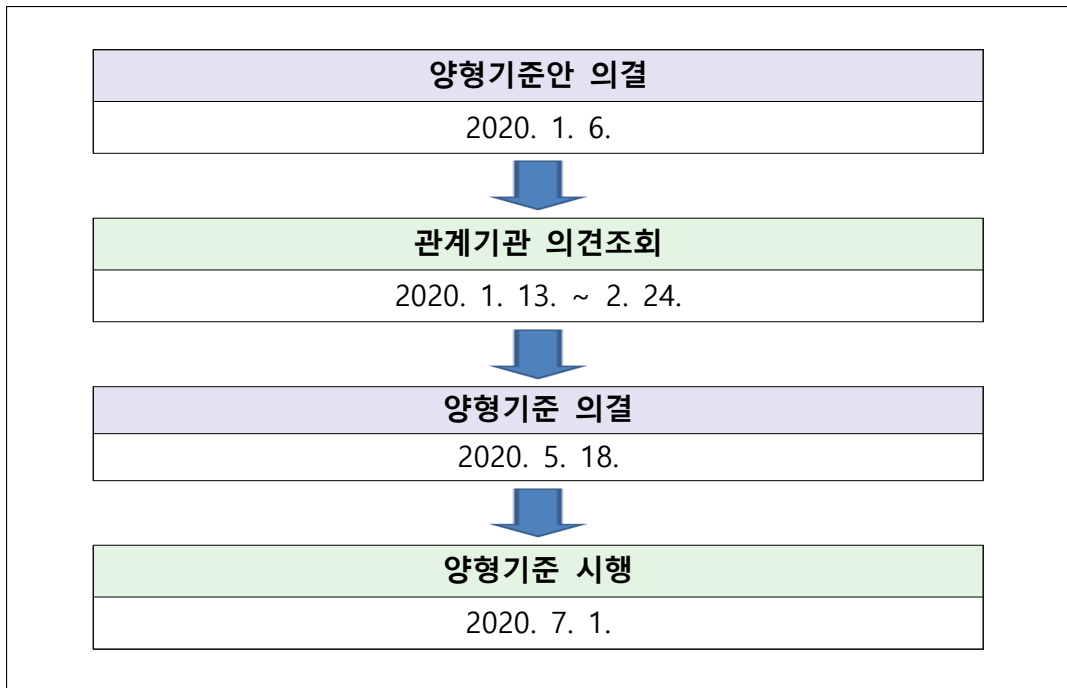
○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의결(2019. 6. 10. 제95차 회의)

- 전반기 : 디지털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다만, 균형법상 성범죄는 양형기준 수정 방식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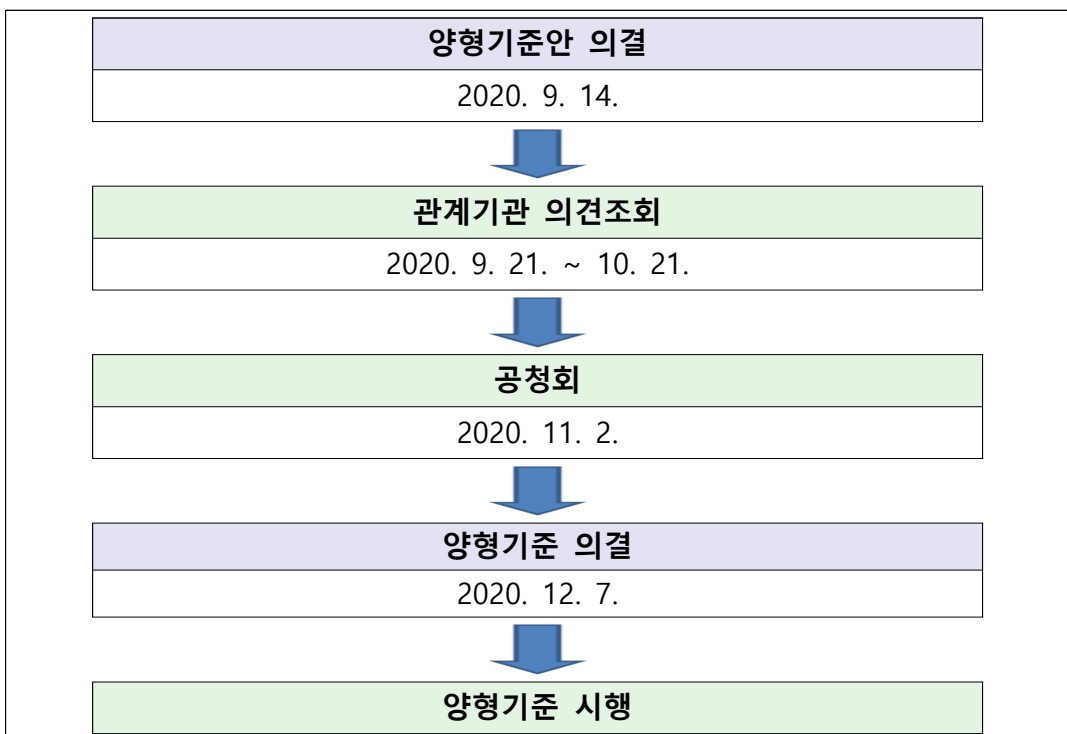
- 하반기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 2019. 7. 8. ~ 7. 26. 및 2020. 7. 9. ~ 7. 29. 양형자료 출장조사

○ 균형법상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2021. 1. 1.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2) 제7기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¹⁾	다수범 ²⁾	상습범 ³⁾
1	제작 등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7년-19년6월	7년-29년3월	10년6월-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6년-18년	6년-27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3	배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5	구입 등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1년6월-4년6 월	1년6월-6년9 월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법정형 동일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비교(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

구성요건(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청소년성보호법 7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① 1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청소년성보호법 11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

1)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하 같음

2)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전제로 함, 이하 같음

3) 특별가중영역에 대한 상습범을 전제로 하고, 가중영역에 대한 상습범이나 기본영역에 대한 상습범인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이하 같음

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권고하되, “자살,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는 삭제함으로써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조직적 범행의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함
-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 신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촬영	4월-10월	8월-2년	1년-3년	1년-4년6월	1년-6년9월	1년6월-6년9월
2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1년6월-6년	1년6월-9년	2년3월-9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6년-18년
4	소지 등	-8월	6월-1년	10월-2년	10월-3년	10월-4년6월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7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7개 제시
-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과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함
-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
-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함(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편집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10월-3년9월	10월-5년7월15일	1년3월-5년7월15일
2	반포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10월-3년9월	10월-5년7월15일	1년3월-5년7월15일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1년6월-6년	1년6월-9년	2년3월-9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협박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년	2년-9년	3년-9년
2	강요	1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5년-12년	5년-18년	7년6월-18년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8월-2년	8월-3년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어 피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

(나) 균형법상 성범죄

- 균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 균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 범위를 설정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참조하되, 균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균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군사법원 사건인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으로써 군사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

(다) 주거침입범죄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대유형 분류
 - 기본적 구성요건(일반적 기준)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2개 대유형으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각 구성요건대로 별개 소유형 분류

[형량범위 관련 사항]

-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6월	4월-1년	8월-2년

○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라) 환경범죄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범죄의 실제 성격, 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8개 법률[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② 대기환경보전법, ③ 물환경보전법, ④ 해양환경관리법, ⑤ 폐기물관리법,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⑦ 하수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등 8개 법률] 중 다음 기준에 따라 앞의 6개 법률[① 가축분뇨법, ② 대기환경보전법, ③ 물환경보전법, ④ 해양환경관리법, ⑤ 폐기물관리법, ⑥ 건설폐기물법 등 6개 법률]위반만을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함

※ 양형기준 설정대상 포함 기준

- 법정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 개별 환경관계법상 처벌 규정의 법정형(징역형)은 ‘7년 이하’가 가장 높은 수준임. 그 밖에 죄책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법정형이 높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낮음

- 실제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범죄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
 - 신고 사례가 없는 범죄는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신고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 범죄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행위 태양 및 죄질 고려
 - 환경범죄는 대체로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중간배출 등 직접적 환경침해행위, ②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설치·영업 행위, ③ 기타 행정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분류됨
 - 대체로 ①>②>③의 순으로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시 ①과 ②는 포함하되 ③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대유형 분류
 - 개별 환경관계법의 체계에 따라 ①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② 대기환경범죄, ③ 물환경 범죄, ④ 해양환경 범죄, ⑤ 가축분뇨 범죄로 분류
 - 건설폐기물 범죄는 세부 범죄 유형이 폐기물 범죄와 거의 일치하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폐기물 범죄와 함께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범죄 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

[형량범위 관련 사항]

○ 형량범위 결정 기준

- 양형실무 조사 결과,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 등을 고려
- 선고 사례가 부족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는 동일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 양형기준 형량범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7년 이하 징역	4월 - 1년	8월 - 2년	1년 6월 - 4년
5년 이하 징역	- 10월	8월 - 1년 2월	1년 - 2년 6월
3년 이하 징역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년 이하 징역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이하 징역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양형인자 관련 사항]

- 양형인자 주요 특징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 반영하여, 환경오염 정도를 특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조직적 범행 양상을 떨 수 있는 환

경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 단속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원상회복 노력 촉구

Ⅲ. 제8기 양형위원회 구성

1. 양형위원

【2021. 4. 27. 기준】

지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위원장	김 영 란	제11기	前)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임
위원 (법관)	김 광 태	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구 회 근	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 희	제26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손 철 우	제25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상임위원)
위원 (검사)	조 상 철	제23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양형위원 연임
	고 경 순	제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 연임
위원 (변호사)	김 관 기	제20기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 영 환	제20기	변호사
위원 (교수)	김 혜 정	해당 없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수 진	제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민 병 우	해당 없음	MBC 보도본부장
	서 창 록	해당 없음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 전문위원

【2021. 4. 27. 현재】

구분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소속	직위
법원	최승원	제30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이재신	제32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백광균	제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검찰	최성국	제30기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유관모	제38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형일	군법무관 제14회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교수/ 전문가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해당 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자문위원

【2021. 4. 27. 현재】

분 야	성 명	경 력
학 계	문 채 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문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숙 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미 영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은 희	(前)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장 영 민	(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학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 인 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계	김 세 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변 상 옥	YTN 앵커
시민, 사회단체	김 자 혜	(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신 혜 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前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IV. 2021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1. 양형기준 설정, 수정 지원 및 책자 발간

가. 제8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 지원

- 제8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 회의 및 전문위원 회의 지원,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제8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지원
-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2021. 6. 예정)
 - 양형기준 설정 작업 시작에 따른 양형자료조사 (2021. 7. 예정)

나. 『2021 양형기준』 책자 발간·배포

- 『2020 양형기준』 책자 발간 이후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과 마약범죄, 강도범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담은 『2021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2021. 6. 각급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배포 예정

다. 『2020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2020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2021년도 활동계획을 담은 『2020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배포 예정

라. 『2020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발간 및 양형위원회 보고

- 2020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 양형기준 준수

현황, 형량분포, 선고내역 등을 분석한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를 2021. 12. 발간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함

2. 양형연구회 활성화

가. 추진방향

-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
-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정책 연구·심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2018. 7. 16. 양형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창립(現 양형연구회 회장은 이용식 전 서울대 법전문 교수이고, 현재 약 78명의 법관, 약 48명의 교수, 약 58명의 변호사 등 215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기관, 실무계, 학계 등 각계 회원들의 참여와 양형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

나. 구체적 방안

- 양형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 ▶ 연 2회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갈 예정(2018. 11. 1.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의결)
 - ▶ 2021. 6. 21.(월)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예정
 - ▶ 2021. 11. 양형연구회 하반기 심포지엄 개최 예정
-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활성화
 - ▶ 양형연구회 운영계획 확정 및 연구주제 선정

- ▶ 2021. 3. 26. 운영위원회 개최
- ▶ 장기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리스트화할 예정

다. 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심포지엄 일시·장소·방식

- ▶ 2021. 6. 21.(월) 14:00 ~ 18:00
- ▶ 장소 및 방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 심포지엄의 주제: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오프라인) 또는 접속(온라인) 확인	
14:00~14:10	식 전 행사	개회식
		인사말(각 3분)
		회의 정리(2분)
14:10~15:30 [80분]	◆ 제1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15:20~15:30	플 로 어 토 론	
15:30~15:50	중 간 휴 식	
15:50~17:50 [120분]	◆ 제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관사)	

시 간		내 용	
15:50-16:35 [45분]	주 제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중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16:35-16:55 [20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 1: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부장검사) 	
16:55-17:15 [20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 2: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17:15-17:35 [20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 3: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3.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콘텐츠 추가 제작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관련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어려운 양형 절차를 직접 체험)
- 2018. 1. 2. 살인죄와 절도죄 오픈
- 2019. 3. 11. 강제추행, 사기죄 오픈
- 2020. 2. 3.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오픈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 대법원 1층의 법원전시관에 양형체험 프로그램 설치 ⇨ 대법원 방문객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및 홍보
 - 각급 법원(법정방문 학생, 배심원 후보자), 언론(대법원 출입기자), 사법연수원(중고등학생 연수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육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방안 모색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제작

-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예산 감축으로 추가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기존 제작 체험 대상 범외 외에 체험 대상 범외를 다양화하고, 이용자가 20대 이하 학생에 다소 치우쳐 있고 체험완수 비율이 낮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임
- 예상 일정
 - 2021. 3. ~ 5. 양형체험 프로그램 제작 대상 범외(2개) 확정
 - 2021. 6. 입찰 공고
 - 2021. 7.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1. 8. ~ 9. 추가 콘텐츠 제작
 - 2021. 9. ~ 10. 추가 콘텐츠 시사회 및 시연회 개최
 - 2021. 11. '202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예정

4. 新양형기준시스템 운영

○ 개요

- 2010년 개발된 양형기준시스템의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2018. 4.부터 개발을 진행하여 2019. 2. 25. 新양형기준시스템 정식오픈

○ 시스템 개발 내용

- 사건정보의 해당 사건명에 대한 범외유형 자동선택을 통한 **양형기준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범외군, 범외유형, 적용법조, 양형기준 시행일 등의 자동현출 가능)
- 판결문 작성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율 제고
-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판결문 검색기능추가** ⇨ 해당사건과 동일 죄명, 동일 적용법조, 동일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사건의 판결문 검색 가능 ⇨ 해당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쉽게 검색 가능

-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법률 개정 확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검색기능 추가**(양형기준 시행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 추가)
- 시스템 개발효과
 - **新양형기준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증대**(사건정보를 통한 범죄유형 자동선택) + 시스템을 통한 양형기준 **형량범위 및 처단형 산출기능 강화** + 판결문 검색기능 및 개정법률 확인기능 강화 ⇨ **형사법관의 양형기준 적용 및 판결문 작성 편의 증대**
 - **新양형기준시스템의 이용증가를 통한 명시적 기재율을 제고 효과 기대**
- 시스템 업데이트
 - **新양형기준시스템** 이용자들이 게시판 등을 통한 기능추가·수정 요청 시 수시 반영
 - 전산정보국과 협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사업 진행 중

5. 강의 및 교육

가. 양형기준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법관 강의

-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임법관연수, 형사재판실무연수 및 군사법원의 군판사연수 등 과정을 통해 양형기준의 취지와 원리, 현황 등을 소개, 강의

나. 양형기준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 강의

- 사법연수원 혹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및 교사 등 연수, 체험 과정을 통해 양형체험 프로그램의 소개와 아울러 양형기준의 취지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및 그림자 배심원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채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검찰 공판검사단 및 국회 입법조사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양형기준의 취지와 원리 강의, 우리나라 방문 해외 법관 상대로 양형기준 소개는 2019년까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6.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및 해외 홍보

- 추진목적
 - 외국 양형위원회·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
- 추진경과
 - 2019년까지는 매년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4~5인이 외국 양형위원회 또는 법원을 방문하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의 현황을 시찰하고 오는 출장 방식이었음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출장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예산 또한 감액되어 미실시
 -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추진계획

가. 영문 양형기준 책자 발간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 필요 ⇒ 외국 양형위원회 관계자나 학술 연구 단체·개인에게 영문 양형기준 책자 제공 필요가 있음
- 영문 양형기준 책자가 2014년 발간 이후 현재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책자 재고도 소진됨
- 현재 한글로 된 「2020 양형기준」 책자를 번역한 「2021 Sentencing Guidelines」가 번역을 마쳤고, 감수 작업 진행 중임

- 2021. 5.~2021. 6. 중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

나.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 2014년 이후 양형위원회 영문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현재 기준 부정확한 내용을 바로잡고, 「2021 Sentencing Guidelines」의 파일을 등재할 예정
- 「2021 Sentencing Guidelines」 발간에 발맞추어, 2021. 6.~2021. 7. 중 업데이트 진행 예정

V. 2019년 선고 판결⁴⁾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

위원회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1기	살인범죄	89.8	92.3(▲)	90.9(▼)	92.0(▲)	92.2(▲)	91.4
	뇌물범죄	77.9	73.2(▼)	82.7(▲)	75.2(▼)	77.1(▲)	77.4
	성범죄	86.5	87.9(▲)	87.4(▼)	86.9(▼)	86.2(▼)	87.0
	강도범죄	87.8	90.8(▲)	88.3(▼)	87.2(▼)	83.4(▼)	87.7
	횡령·배임범죄	94.5	95.4(▲)	94.7(▼)	92.8(▼)	94.2(▲)	94.4
	위증·증거인멸범죄	90.1	92.6(▲)	94.4(▲)	89.8(▼)	89.9(▲)	91.6
	무고범죄	95.7	98.1(▲)	96.8(▼)	97.3(▲)	95.7(▼)	96.8
	합계	89.4	90.7(▲)	90.2(▼)	88.8(▼)	88.8(-)	89.6
제2기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71.4	89.5(▲)	75.9(▼)	75.8(▼)	70.7(▼)	76.3
	사기범죄	84.2	85.4(▲)	85.4(-)	84.0(▼)	85.7(▲)	84.9
	절도범죄	87.1	90.5(▲)	86.9(▼)	85.6(▼)	85.9(▲)	87.2
	공문서범죄	86.2	84.7(▼)	87.5(▲)	81.9(▼)	81.5(▼)	84.3
	사문서범죄	96.4	95.3(▼)	96.1(▲)	95.1(▼)	94.9(▼)	95.6
	공무집행방해범죄	93.3	92.9(▼)	92.6(▼)	93.3(▲)	92.5(▼)	92.9
	식품·보건범죄	76.4	78.1(▲)	58.8(▼)	79.5(▲)	77.2(▼)	72.8
	마약범죄	81.8	84.2(▲)	82.8(▼)	82.8(-)	81.8(▼)	82.7
	합계	86.3	87.6(▲)	86.6(▼)	86.0(▼)	86.5(▲)	86.6
제3기	증권·금융범죄	78.2	69.2(▼)	68.8(▼)	69.9(▲)	69.0(▼)	71.7
	지식재산권범죄	79.5	82.7(▲)	80.5(▼)	76.9(▼)	76.8(▼)	79.8
	폭력범죄	96.3	98.7(▲)	98.3(▼)	98.0(▼)	98.1(▲)	97.8
	교통범죄	95.1	95.8(▲)	94.6(▼)	95.5(▲)	96.2(▲)	95.4
	선거범죄	78.0	88.3(▲)	72.9(▼)	88.5(▲)	80.8(▼)	82.9
	조세범죄	91.1	88.0(▼)	92.7(▲)	92.8(▲)	95.6(▲)	92.0
	공갈범죄	90.7	93.7(▲)	93.7(-)	86.8(▼)	92.6(▲)	91.7
	방화범죄	90.6	90.9(▲)	93.0(▲)	93.1(▲)	96.7(▲)	92.7
	합계	94.9	96.2(▲)	95.5(▼)	95.8(▲)	96.5(▲)	95.7
제4기	배임수증재범죄	81.7	78.3(▼)	84.7(▲)	81.1(▼)	75.1(▼)	80.3
	변호사법위반범죄	76.9	59.5(▼)	76.9(▲)	70.3(▼)	85.6(▲)	72.1
	성매매범죄	78.8	82.4(▲)	86.6(▲)	84.9(▼)	87.9(▲)	84.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94.3	96.1(▲)	94.1(▼)	90.4(▼)	93.5(▲)	93.5
	장물범죄	94.0	95.4(▲)	94.2(▼)	87.8(▼)	90.1(▲)	92.9

4) 2020년 선고 판결은 통계 취합 중이며, 2021년 12월 무렵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가 발간되어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단위: %

위원회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권리행사방해범죄	94.1	93.2(▼)	89.7(▼)	91.5(▲)	90.1(▼)	91.2
	업무방해범죄	90.7	94.5(▲)	92.2(▼)	88.6(▼)	90.3(▲)	91.6
	손괴범죄	98.3	98.4(▲)	94.7(▼)	93.5(▼)	96.0(▲)	95.7
	사행성·게임물범죄	92.8	93.2(▲)	93.5(▲)	90.1(▼)	89.3(▼)	91.7
	합계	84.7	89.8(▲)	90.6(▲)	88.4(▼)	89.9(▲)	89.2
제5기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98.3	96.9(▼)	97.3(▲)	97.1(▼)	97.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94.7	92.9(▼)	92.2(▼)	94.4(▲)	93.3
	과실치사상범죄	-	93.7	92.2(▼)	92.1(▼)	95.2(▲)	93.3
	도주·범인은닉범죄	-	-	90.6	96.5(▲)	96.8(▲)	96.1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	95.8	91.9(▼)	96.0(▲)	94.3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	100.0	96.8(▼)	88.5(▼)	94.0
	합계	-	96.1	94.9(▼)	95.4(▲)	95.6(▲)	95.4
제6기	명예훼손범죄	-	-	-	-	100.0	100.0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	-	-	100.0	1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	-	-	99.5	99.5
	합계	-	-	-	-	99.5	99.5
전체		89.7	90.8(▲)	90.3(▼)	89.9(▼)	90.7(▲)	90.3

※ 주 :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 증가한 경우에는 '▲'로 나타냄.

-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2015년은 89.7%였으나, 2016년 90.8%, 2017년 90.3%, 2018년 89.9%, 2019년 90.7%임
- 2019년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명예훼손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1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99.5%), 폭력범죄(98.1%), 근로기준법위반범죄(97.1%) 순으로 높았고, 증권·금융범죄(69.0%),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70.7%), 배임수증재범죄(75.1%), 지식재산권범죄(76.8%) 순으로 준수율이 낮았음

역대 양형위원회 구성 (출범 시 기준, 별첨1)

지 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위원장	김석수 前대법관, 국무총리	이규홍 前대법관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전호숙 前헌법재판관 이대법전문장	이진강 前대한변협 회장	정성진 前법무장관	김영란 前대법관, 前국민권익 위원장
위원 (법관)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구옥서 서울고법원장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법원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임종현 서울고법부장	여상훈 서울고법부장	이창형 서울고법부장	서대환 서울고법부장	강승준 서울고등부장
	서기석 서울고법부장	성낙송 서울고법부장	김기정 서울고법부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박정화 서울고법부장	고연금 성남지원장
	성낙송 상임위원	김광태 상임위원	임성근 상임위원	이진만 상임위원	이규진 상임위원	천대엽 상임위원	김우수 상임위원
위원 (검사)	홍경식 서울고검장	권재진 서울고검장	차동민 서울고검장	임정혁 서울고검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경재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태섭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최재혁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명관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
	조건호	조건호	이광수	이광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위원 (교수)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대 법대	하태훈 고대 법전문	오영근 한양대 법전문	박광민 성균관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원혜욱 인하대 법전문
	한인섭 서울 법대	조 국 서울 법대	이상원 서울 법전문	서보학 경희대 법전문	정현미 이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이주원 고려대 법전문
위원 (학식· 경험)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	고대영 KBS 보도국장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장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남인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이연주 한국청년 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유성희 YWCA 상임이사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한국여성 단체연합 공동대표

2021년 양형위원회 예상 일정안 (별첨 2)

109차 회의	5. 10.(월) 오후	● 출범식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	--------------------



전문위원 회의	5. 24.(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	-----------	--------------------



110차 회의	6. 7.(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확정
---------	----------	--------------------



※ 6. 21.(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양형자료조사	7월	● 설정, 수정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	---------------------------



전문위원 회의	8. 23.(월)	● 양형기준 심의
---------	-----------	-----------



111차 회의	9. 6.(월)	● 양형기준 심의
---------	----------	-----------

※ 10. 22.(금) 양형위원회 회의(워크숍)
 11. 22.(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11. 29.(월) 양형위원회 회의
 2022. 1. 10.(월) 양형위원회 회의